

2025년도 (재)하남문화재단

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(안)

의안	
번호	

제출연월일 : 2025. 4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2025년 (재)하남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에 대한 하남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
 - ※ 「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」 행정안전부 해석기준
 - 출자·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, 출자·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·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,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.

2. 주요내용

- (재)하남문화재단 출연금 : 9,274,277천원 (증153,500천원)
 - 필요성 : 하남시 문화예술 진흥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(재)하남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함
 - 사업내용 : 재단 운영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 업무 추진

3. 세부내용

□ 출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출연대상	출연금액			증감사유	비고
		2025년 본예산	2025년 2회 추경	증감액		
1	(재)하남 문화재단	9,120,777	9,274,277	153,500	· stage 하남! 버스킹 운영 · 생활문화센터(감일) 운영	

□ 출연대상

○ 설립근거

- 민법 제32조
-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
○ 일반현황

구 분	합 계	임원	정규직	계약직	파견공무원
정 원	49	1	46	2	-
현 원	48	1	44	3	-

○ 기능 및 주요사업

-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
- 박물관 운영 및 관리
-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- 문화예술의 국내·외 교류사업
-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·관리 및 조사 연구
- 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·관리
- 「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

□ 출연금액 : 9,274,277천원(2025년 본예산 9,120,777천원)

○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액 : 153,500천원 (1.68%증가)

○ 증감사유

- Stage 하남! 버스킹 운영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공연의 질적 향상 도모 (80,000천원)
- '25년 8월 준공 예정인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운영비 및 기자재비 구입 지원(73,500천원)

□ 출연근거

- 「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7조(운영재원 등)

□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내실있는 Stage 하남! 버스킹 운영을 통한 K-컬처 중심도시로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
- 생활문화센터 추가 개소에 따른 사업비용 편성으로 주민 밀착형 생활 문화사업의 확대 운영

□ 검토의견

- 권역별 특색있는 공연 및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즐기는 공연문화 조성을 위한 Stage 하남! 버스킹 비용과 생활문화센터 신규 개소 예정(감일, 1개소) 운영비 및 기자재비 편성으로 9,274,277천원을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출연하여 재단 운영 및 문화예술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.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 법인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
2. 박물관 운영 및 관리
3.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4. 문화예술의 국내·외 교류사업
5.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·관리 및 조사 연구
6. 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·관리
7. 「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
8.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“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
제5조(재산의 조성)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2.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
3. 그 밖의 수입금

제7조(운영재원 등) 시는 법인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) 법인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